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완화 개선방안

2025. 9. 4.

금 융 위 원 회

목 차

I. 추진배경	1
II. 경과 및 개선필요성	2
III. 개선방안	5
IV. 기대효과	9
V. 향후 추진계획	10

I. 추진 배경

□ 그간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및 금융권의 노력 지속

① (이자환급) 은행 및 중소기업권은 소상공인 등에 이자환급 실시

- 은행권의 경우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4% 초과 금리 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 등에게 1.5조원 이자환급 실시('24.2월)

- 중소기업권*은 재정을 활용하여 5%~7% 미만 금리의 대출을 보유했던 소상공인 등에 2,112억원의 이자환급 실시('24.3월)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② (저금리 대환) 고금리(7% 이상)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24.3월)

- 그간 총 3.1만 차주에 대해 1.66조원의 대환보증* 공급

* [한도]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보증비율] 90%

③ (채무지원) 연체우려차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119플러스*'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실시('24.12월)

* 연체우려차주 등에 대해 장기분할상환, 금리 인하 등 제공

**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 그간 '119플러스'는 1,657억원, '폐업자지원'은 868억원 규모 지원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지연,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 지속

* ['24년 사업실적] 매출 △12.8% 감소, 순이익 △13.3% 감소(한국경제인협회)

[소상공인 대출] 평균 대출 금리 4.99%, 65.9%는 금리 5% 이상(중소기업중앙회)

➔ 상시 금리 경쟁 구조 강화와 AI를 활용한 금융혁신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추진

Ⅱ. 경과 및 개선 필요성

1. 대출 갈아타기

□ (경과) '23.5월, 개인(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하여 '25.6말 현재 총 38만명·20.9조원 규모의 대출이 이동

○ 금리가 평균 1.45%p 하락하고 1인당 年 177만원 이자 절감

< 대출 유형별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성과('25.6.30일 누적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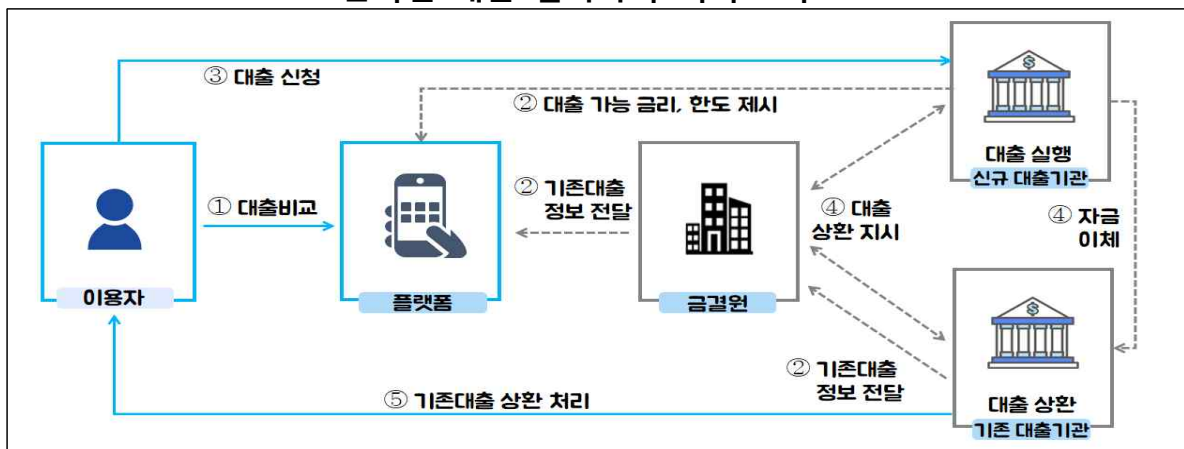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3개 대출유형 합산(평균)
대출이동 차주	306,050명	51,237명	21,287명	378,574명
대출이동 규모	7조 3,200억원	10조 96억원	3조 5,302억원	20조 8,598억원
평균 금리인하폭	1.60%p	1.36%p	1.39%p	1.45%p
1인당 이자절감액	64만원	265만원	231만원	177만원

□ (문제점) 그간 개인 신용대출('23.5월)을 시작으로 개인 주담대·전세대출('24.1월) 등으로 갈아타기 대출범위를 지속 확대하였으나,

* 참여업권: (신용) 은행·저은·여전 (주담대) 은행·보험·저은·여전 (전세) 은행·보험

○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금리부담 절감을 위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대상에 소상공인 대출을 포함시켜야한다는 요청 지속 제기

<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구조 >



2. 금리인하요구권

- (경과) 그간 금리인하 가능성 있는 차주에 대한 선제적 안내(반기), 수용률 공시(반기) 등 다양한 실효성 제고 노력 지속
 - * 당초 업권별 모범규준 등에 근거를 두고 자율적 운영 →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18.12월), 상호금융('22.1월), 새마을금고('22.11월) 개별법에 근거 반영
- (신청건수) 신청건수는 '24년 이후 하락 추세 전환
 - * ('22) 2,544천건 → ('23) 3,961천건 → ('24) 3,895천건
- (수용률·이자감면액) 수용률 및 이자감면액 역시 하락 추세 전환
 - * (수용률) ('22) 31.2% → ('23) 35.7% → ('24) 33.7%
 - (이자감면액) ('22) 1,905억원 → ('23) 3,203억원 → ('24) 2,236억원
- (문제점) 수차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불수용 차주들을 중심으로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불만 등이 지속
 - * 금리인하 실적 공시, 선제적 안내 강화 등 제도개선방안 마련('21.10월, '23.2월)
- ① 바쁜 생업 등으로 인해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의 존재 및 신청 방법 등을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고,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게 뭔가요? (네이버카페 '채무 길잡이')

상황이 좋아지면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할수 있는거 같은데, 저도 그럴 수 있을지 알아보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건 별 차이가 없는데, 6개월전에 이직하면서 연봉이 좀 올랐어요. 신용점수도 올랐나 해서 다시 봤는데, 신용점수는 뭐 별반 다름없어요. 연봉이 ...

② 금융회사별로 접근편의성 및 안내 정도의 차이가 크며,

* (예) 모바일앱 UI 편의성, 선제적 안내대상인 인하기능성 있는 차주 선별기준 상이 등

③ 인하요구 불수용 사유에 대한 설명 및 금리인하가 되기 위한 개선사항 안내 미흡 등으로 차주의 제도에 대한 불만이 큼

와 금리인하 요구권 이거 되는거맞나요? (네이버카페 '신용카드 박물관')

작년 12월 대출받고 현재 작년12 월 보다 연봉 천만원가까이 높고, 신용점수도 더 올랐는데 금리인하 요구권 하나까 거절당하네요 ㅋㅋ 되는건맞는건가 싶네요

금리인하요구권 성공하신분 있나요? (네이버카페 '포항 부동산스터디')

금리인하요구권제도에 관한 안내문자가 많이옵니다. 소득상승등의 사유로 신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금리인하를 신청할수있다고 되어있는데 엄청난 소득상승이 아닌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잘 되지 않는것 같더라구요. ...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에 대하여입니다.
금, 신용등급 상향, 부채감소와
함께 연봉이 있는 경우 금리인
하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개선이 관여하여 당
회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는 경우 따라 금리가 인위되지
않습니다.

신청해서 상담했더니 안됐어요 괜히
시간낭비 허탈

아파트 중도금무이자대출 중에는 해당
이 안되는거죠??

3. 중도상환수수료

- (경과) 그동안 금융기관이 합리적인 기준 없이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실비용*만을 반영하도록 제도 개편(「금소법 감독규정」 개정, '25.1월 시행)

* ①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및 ②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 그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은행권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절반 이하*로 하락

* (은행권 평균) 동산·부동산 담보대출 : 고정 1.32% → **0.47%**, 변동 1.17% → **0.40%**
신용대출 : 고정 1.11% → **0.07%**, 변동 0.99 → **0.06%**

- 제2금융권(저축은행, 여전 등)의 경우에도 은행권 대비 하락폭이 크지는 않으나*, 대체적으로 하락**

* 제2금융권의 경우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등으로 인한 모집비용이 높게 나타남

** (저축은행 평균) 동산·부동산 담보대출 : 고정 1.59% → **1.05%**, 변동 1.78% → **1.14%**
신용대출 : 고정 1.61% → **1.05%**, 변동 1.67% → **1.11%**

- (문제점) 신탁을 제외한 상호금융권의 경우 「금소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미적용

*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는 현행 감독·제재 체계가 금소법 제정 당시 반영되지 않아 금소법 적용범위에서 제외

- 산림조합의 경우 자체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적용하여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되었으나,

* (산림조합 평균) 동산·부동산 담보대출 : 고정 2.0% → **0.59%**, 변동 1.8% → **0.59%**
신용대출 : 고정 1.6% → **0.06%**, 변동 1.4% → **0.06%**

- 소상공인의 대출비중이 높은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의 경우 여전히 높은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부과 중

* (상호금융권 평균) 동산·부동산 담보대출 : 고정 1.73%, 변동 1.59%
신용대출 : 고정 0.91%, 변동 1.29%

Ⅲ. 개선방안

- ① (대출 갈아타기) 은행권 신용대출 중심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참여업권 및 대상상품 확대 검토
- ② (금리인하요구권) AI Agent(마이데이터사업자)를 활용한 금리인하 요구권·자동화평가 대응권 활성화, 비대면 신청 확대 등 실효성 제고
- ③ (중도상환수수료) 농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 내 대출규모가 큰 상호금융권까지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확대 적용

1. 대출 갈아타기 확대방안

- (1단계) 개인사업자 대출의 비중* 및 급격한 머니무브 우려 등 감안하여 '은행권' '신용대출' 대상으로 대출 갈아타기 확대 도입

* 사업자대출 750.4조원 중, 은행 469.4조원(62.5%), 상호금융(새마을금고 포함) 231.7조원(30.9%), 여전 32.0조원(4.3%), 저축은행 16.8조원(2.2%) 順 ('25.3월말)

- 은행권의 비대면 대출상품 개발, 대출비교플랫폼 입점 확대 유도
- 은행·대출비교플랫폼·금융결제원 간 기존대출 대환가능여부, 중도상환수수료 등 데이터를 수집·전달 가능하도록 전산 구축*

* 향후,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시 전산 연계 추진

- (2단계) 은행권 갈아타기 안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¹참여업권 (은행→2금융권) 및 ²대상상품 확대(신용→보증·담보) 추가 검토

⇒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한 이자부담 경감

2.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 방안

[1]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및 자동화평가대응권 활성화

□ (금리인하요구권)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가 차주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의 금융자산·거래정보 등을 토대로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 차주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대리신청 1회 동의시, 추후 별도 신청 없이 주기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 신청 편의성 및 수용률 대폭 개선

□ (자동화평가대응권*)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된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불수용 사유를 파악하고, 인하를 위한 필요사항 등을 차주에게 안내

* 신용정보법(제36조의2)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이용자에게 신용평가결과, 평가 주요기준 등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추후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후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한 금리인하요구권 대리행사 실시

⇒ 금융 전문성을 보유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내 손 안의 금융비서')가 생업에 바쁜 차주를 대신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금리인하 신청률·수용률을 획기적으로 제고

[2] 불수용 사유 안내 구체화

□ 신청이 불수용될 경우 차주별로 은행 내부신용등급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은행권부터 시행 후 타 업권 확대)

⇒ 차주가 금리인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쉽게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개선 가능

<불수용 사유 안내 개선안(예시)>

현행	개선 안내문구(예시)	
① 대상상품 아님	신상정보	추가적인 개선이 있는 경우 신용등급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소득 증가, 매출액·이익 증가, 장기업력, 전월세에서 자기로 전환 등은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② 최저금리 적용	당행거래 정보	추가적인 개선이 있는 경우 신용등급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행과의 수신거래실적(상품가입, 수신평잔 등), 급여·공과금·지로이체 등 부수거래 확대는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③ 신용등급 변동 無	대출거래 정보	현재 개선 필요성이 낮습니다* 보유한 대출 및 보증채무의 금액 및 건수 증가는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④ 신용등급 개선 경미	카드거래 정보	추가적인 개선이 있는 경우 신용등급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금액으로 장기간의 카드 이용은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현금서비스 이용은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⑤ 최고금리 초과	연체정보	현재 개선 필요성이 낮습니다* 연체일수, 연체건수, 연체금액의 증가는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평가기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현재 뚜렷하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

[3] 비대면 신청채널 전면 확대 등 신청편의 제고

① 개인사업자 대출의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채널*(모바일, 인터넷 등)을 **쑈 금융권**(은행·캐피탈사·상호금융 등)에서 **전면적으로 확대**

* 현재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개인사업자 차주는 대면 금리인하요구 신청만 가능하여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하는 불편함 존재

② 금리인하 가능성 있는 차주에 대한 선제적 안내 대상을 개인사업자 차주까지 **쑈 업권으로 확대**

* 현재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개인사업자 차주에 대해서는 선제적 안내 미실시

③ SMS 문자 또는 앱 푸쉬알림을 통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시(정기·선제적 안내 등)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URL)**'를 필수 포함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편의 제고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차주의 접근성 및 제도 활용도 향상

3. 중도상환수수료

- 상호금융권 조합*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자율 도입을 유도하고 각 중앙회에서 관련 공시체계 구축(~'25.3분기까지 완료)

* 전체 2,618개 조합(농협 1,111개, 새마을금고 1,276개, 수협 90개, 산림 141개)

- '25년 상반기 중 개별조합별 중도상환수수료를 시뮬레이션
→ 각 조합에 결과 제시 및 자율 도입 권고

<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시뮬레이션* 결과(잠정) >

- (개인사업자) 동산·부동산 담보대출 : 1.1~2.0% → 0.6~0.9% (△0.5~1.1%p)
신용대출 : 0.9~1.7% → 0.1~0.5% (△0.8~1.2%p)

* 과거 3년치 대출유형별(담보대출, 기타담보대출, 신용대출) 중도상환 발생계좌 비용을 조사하여 그 평균값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책정

- 중앙회가 매년 개별 조합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산정하고 공시 까지 할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의 전산체계 구축 중*

* 수협, 새마을금고의 경우 매년 자동 산출을 위한 전산 추가개발을 하반기 내 진행 예정

-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년중 우선 도입하고 (~'25.4분기), 중·장기적으로는 「금소법」 또는 「신협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 추진

- 개별 조합 여신업무기준에 중도상환수수료의 기회비용 산정 방식* 및 행정·모집비용 포함·제외사항** 등을 반영토록 하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추진

* 자금운용 기회비용 : 대출취급시점과 회수시점의 금리차이 등을 고려하여 산정

** 대출행정·모집비용 : 대출취급에 따른 직접 지출비용만을 반영(인건비·시스템비 제외)

- 상호금융권 의견 수렴 및 추진방안 검토(8~9월) →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12월) → '26년 신규계약부터 적용('26.1월)

⇒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경감 및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등 저금리 대환대출 촉진

IV. 기대효과

◇ **금융비용 부담경감 3종 세트 시행시, 연간 최대 2,730억원의 금융비용 경감 효과 추정**

- 금융비용 부담경감 3종 세트가 연계되어 추진될 경우, 개인 사업자 대출의 부담경감을 위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
 - 금리인하요구시 차주의 협상력을 보다 제고
 -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및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확대를 통해 대출 이동의 장벽을 완화

- **연간 최대 약 2,730억원 금융비용 추가 절감 추정**
 - ① (대출 갈아타기) 은행권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시행시 연간 약 70억원*, 향후 참여업권·상품 확대시** 최대 약 650억원 이자 추가 절감
 - * 기존 개인 신용대출의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률(1.46%) 및 평균 금리 인하폭($\Delta 1.6\%p$) 감안
 - ** 실시간 담보 시세평가 체계 마련, 보증기관별 요건·절차 조정 등을 전제로 담보·보증부 대출까지 모두 포함하는 경우

 - ② (금리인하요구권) 마이데이터사업자를 통한 신청 대리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연간 최대 약 1,680억원* 이자 추가 절감
 - * 마이데이터 가입자수, 대출보유가구 비율 및 수용률 20% 상승 등을 감안하여 추정

 - ③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할 경우, 상호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연간 최대 약 400억원*의 수수료 추가 감면
 - *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폭($\Delta 53\%$),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대출 조기 상환 효과(+20%) 등을 가정하여 추정

V. 향후 추진계획

구분	추진계획	일정
대출 갈아타기	□ 개인사업자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26.1분기
	▶ 개인사업자 갈아타기 세부 추진방안 확정	~12월
	▶ 은행 비대면 대출상품 개발 및 대출비교플랫폼 입점	~26.1분기
	▶ 은행·대출비교플랫폼·금융결제원간 전산 구축	~26.1분기
금리인하 요구권	① 개인 마이데이터사업자를 활용한 금리인하 대리신청	~12월
	▶ 신청원·금융기관·마이데이터사업자 등 협의	~9월
	▶ 혁신금융서비스 신청(대리신청 위임 및 정기적 동의 등)	~9월
	▶ 금융권 전산개발 및 테스트	~11월
	▶ 개인 마이데이터사업자를 통한 대리신청 개시	~12월
	②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사업자를 활용한 금리인하 대리신청	'26년 이후
	③ 불수용 사유 안내 구체화	~12월
	④ 금리인하요구 신청편의 제고	~12월
	▶ 비대면 신청채널 확대	(은행) ~9월 (그외) ~12월
	▶ 선제적 안내 확대	~12월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바로가기 안내 확대	~12월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적용	'26.1월~
	▶ 상호금융권 의견 수렴 및 추진방안 검토	~9월
	▶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12월
	▶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적용	'26.1월~